

## 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## 1. 원산지 증명 관련 법령 개정

- 주요 변경 사항은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증명 제출 기한의 축소
- 기존 원산지 증명 제출기한(개정 전)

| 수입업체 등급 | 적용 기준일   | 제출 허용 시한 | 허용 시한 경과 시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MITA    | SPPB 발급일 | 30일 이내   | 통관 자격 정지   |
| AEO     | SPPB 발급일 | 30일 이내   | 통관 자격 정지   |
| GREEN   | SPPB 발급일 | 3일 이내    | 통관 자격 정지   |
| YELLOW  | SPJK 확정일 | 3일 이내    | 통관 자격 정지   |
| RED     | SPJM 확정일 | 3일 이내    | 통관 자격 정지   |

- 개정 법령에 명시된 원산지 증명 제출기한(개정 후)

| 수입업체 등급 | 적용 기준일*  | 제출 허용 시한     | 허용 시한 경과 시 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MITA    | SPPB 발급일 | 5일 이내        | FORM AK 불인정 |
| AEO     | SPPB 발급일 | 5일 이내        | FORM AK 불인정 |
| GREEN   | SPPB 발급일 | 3일 이내        | FORM AK 불인정 |
| YELLOW  | SPJK 확정일 | 익일 정오(낮 12시) | FORM AK 불인정 |
| RED     | SPJM 확정일 | 익일 정오(낮 12시) | FORM AK 불인정 |

- 용어해설
  - SPPB : SURAT PERSETUJUAN PENGERLUARAN BARANG / 화물 출고 승인서
  - SPJK : SURAT PEMBERITAHUAN JALUR KUNING / 서류 심사 통지
  - SPJM : SURAT PEMBERITAHUAN JALUR MERAH / 화물 검사 통지
- 적용기준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불인정되므로 YELLOW나 RED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기준 당일 세관에 접수해야 함

\* 출처 : 재무부 장관령 229/PMK.04/2017(2018년 1월 28일 시행)

## 1.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 신청 준비

## 1)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제도 특이사항

- 할랄인증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랄보장시스템 HAS(Halal Assurance System)를 실행하도록 함
- 제조업체는 할랄 정책팀 및 할랄 관리팀을 구성해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함
- 인도네시아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도 2년에 최소 1회 이상의 외부 교육 연수를 필수 이수를 요구 하고 있음
- 할랄보장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 절차를 구축해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고,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와 제한시간을 명시해야 함
  - 감사 결과를 식품 원재료의 변동사항과 함께 6개월마다 LPPOM MUI 에 보고
- MUI 할랄 인증 심사 기관 LPPOM은 한국산 제품 인증 진행을 위하여 두 개 할랄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며, 해당기관을 통해서 할랄인증 접수 및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

## 2) 할랄 보장 시스템(HAS) 기본 서류 구성과 요구 사항

| No | 구분     |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준비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HAS 서류 | 기존 할랄 인증서                     | 신규 경우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       | 할랄보장시스템 매뉴얼<br>- 11 개 필수항목 포함 | HAS 의 11 개항 규정에 맞추어 회사내에서 작성 및 사용 매뉴얼(*심사에 B 등급이상)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       | HAS 상태 또는 HAS 인증서             | 재 등록 업체에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       | 할랄 인증 제품의 처리 공정               | 제품 타입별 공정도를 작성하고 재료 매트릭스를 추가하여 만들(각 제품의 전체 공정도가 필요하지는 않음)/ 제품 사진 자료 첨부 |
| 5  |        | 돼지고기 무사용 시설 증명서               | 돼지고지/돼지 재료의 무사용 시설 증명서를 작성(경영책임자 서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       | 모든 생산 공장 주소 리스트               | 공장 주소 현황 및 시설(설비) 현황, 공장 약도, 공장 배치도를 구성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No | 구분    |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준비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7  |       | 할랄정책 진행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할랄 정책 진행의 근거 자료<br>작성(공장내의 현수막, 기타 등)할랄<br>정책이 적용된 사진자료, 그리고<br>공급자들에게 전달된 서약서 등 |
| 8  |       | 할랄보장시스템(HAS) 내부 훈련 교육<br>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HAS 교육 시행에 대한 근거자료는 참여<br>인력의 목록(사진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      | 할랄보장시스템(HAS) 내부 감사 교육<br>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 내부의 심사 보고서(양식 참조<br>기재-체크리스트 타입과 서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      | 사업자 등록증(Business Registration)<br>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에 영문본 신청 하여 사본 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재료 증빙 | 재료 목록 현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식 기재 목록에 따른 서류 준비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      | 재료 목록별 및 증빙 서류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료에 따른 증빙 서류 확인하여 각<br>제품의 재료에 따른 증빙서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      | 비 할랄인증 제품의 재료 목록<br>현황표(Non halal Product<br>infomation form) | *양식에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4 |       | 할랄인증 제품 원재료<br>매트릭스(MATRIX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*양식에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 | 서면감사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LPPOM 의 서류 승인 및 감사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 | 현장감사  |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사의 현장 방문 일정 조정 등 현장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 | 모니터링  | 할랄보장시스템(HAS)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사진행 모니터링에 따른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8 | 실시    | 할랄보장시스템(HAS)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Lppom 의 추가 정정 요청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2번의 HAS 매뉴얼 작성은 LPPOM의 HAS 규정집 23000을 참고

### 3) 생산 시설 주의사항

- ① 할랄 제품과 돼지 또는 그 파생물을 포함하는 제품 생산 시 같은 생산 라인  
및 관련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됨
- ② 돼지 또는 그 파생물을 포함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된 적이 있는  
생산 라인 및 장비를 할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, 반드시 물로  
일곱(7) 차례 세척해야 하며 흙 또는 오염물의 맛, 향, 색을 제거할 수 있는  
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세척해야 함
- ③ 창고 또는 임시 보관 시설에서 할랄 제품 및 재료와 비할랄 제품 및 재료가  
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

4) 재료 요구 사항 : HAS 23201(할랄 식품 재료 요구 사항)

- ① 할랄 재료에 대한 상세 요구 사항과 규정은 LPPOM MUI 발행 HAS 23201 편을 활용 하여 준비해야 함
- ② 할랄 재료의 평가에는 비위험군, 저위험군, 고위험군으로 크게 구분함. 고위험군 재료의 경우 할랄 인증서를 구비한 재료를 요구 하고 있음
- ③ LPPOM MUI에서는 할랄 인증서 교차 인증 대상으로 25개국 33개(2018년 기준) 인증기관의 할랄 인증서를 인정해 주고 있음. \*원재료에 한함
  - 제조사가 위치한 국가의 할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할랄 인증서만 인정
  - 예) 중국의 제조사가 미국 IFANCA 또는 말레이시아의 JAKIM 인증서를 보유한 재료를 활용한 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 불인정
- LPPOM MUI 인정 해외 할랄인증 기관 목록
  - [http://www.halalmui.org/mui14/index.php/main/go\\_to\\_section/7/36/page](http://www.halalmui.org/mui14/index.php/main/go_to_section/7/36/page)

\* 출처 : LPPOM MUI, HAS23000 /23201 규정집